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(2019헌마1165)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(제20505호, 2024. 10. 22.)이 개정되었으며, 개정된 법률 제109조 제10항 및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(안 제76조의5 제1항)
- 나. 별표 6의2에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,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6조의5 제2항, 별표 6의2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5(외국인 등의 급여제한) ①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개월을 말한다.

②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에서 별도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.

1.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(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,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)가 3회 미만인 경우
2. 공단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 적용례) 제76호의5의 개정규정은
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
등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6조의5(외국인 등의 급여제한)</u> ①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개월을 말한다. ②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에서 정한 체류자격이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. 1.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(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 횟수에서 제외하며,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)가 3회 미만인 경우 2. 공단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

체류자격(제75조의5 관련)

외국인의 체류자격(기호)
기업투자(D-8)*, 교수(E-1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거주(F-2)
* 단,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11. 기업투자(D-8)란의 나목·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08